

## 사업시행자의 명칭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사업시행자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또는 명칭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|  |
| 공익사업의 명칭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가격시점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평가서 제출기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평가 의뢰 물건<br>(토지 및 물건의 명세) |          |  |
|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
사업시행자

이

기안자 직위(직급) (서명 또는 인)      검토자 직위(직급) (서명 또는 인)      결재권자 직위(직급) (서명 또는 인)

협조자

**시행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처리기관-일련번호(시행일자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접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편번호      주소     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      팩스번호( )      / 전자우편주소

## 작성 방법

1. "평가 의뢰 물건(토지 및 물건의 명세)"란에는 아래 사항을 적습니다.
- 가. 토지의 명세에는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이용상황, 면적 및 토지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나. 물건의 명세에는 물건의 소재지, 지번, 물건의 종류, 구조·규격, 수량·면적, 소유자 등과 취득 또는 사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다. 대수물건이 건축물 등 물건인 경우에는 이전 또는 취득, 영업인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을 구분하여 물건의 명세에 적습니다.
2. "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" 제16조제1항제7호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"평가조건 및 참고사항"란에 평가자등과 구분하여 적습니다.